공 개

| 의안번호 | 제 18 호 |
|---|---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1. 1. 13.<br>(제 1 차) |

의결사항

# ㈜시소플랫폼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| 제 출 자 | 위원장 은 성 수 |
|---|---|
| 제출연월일 | 2021. 1. 13. |

## 1. 의결주문

㈜시소플랫폼대부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

## 2. 제안이유

㈜시소플랫폼대부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시정명령을 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의무를 위반한 ㈜시소플랫폼대부에 대하여 영업 전부정지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자 함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### 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○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(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 제1항 내지 제2항, 제12조(검사 등) 제7항, 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) 제1항, <별표1>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

○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(이자율의 제한) 제2조 내지 제4항, 제7조의4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) 제1항 및 제2항, <별표2>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

### 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### 라. 관계부서 협의

○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12.3.) 심의필

<별지>

㈜시소플랫폼대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## 1. 조치내용

### 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㈜시소플랫폼대부 : 2021.1.18. 부터 2021.7.17.까지 영업 전부정지 6월 및 시정명령

<시정명령 내용>
① 즉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수취를 중지하고,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
②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, 이를 이행한다
③ 6개월 이내에 초과 수취 이자금액에 대한 환급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한다

## 2. 조치사유

### 가.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

□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*을 초과할 수 없고

* 2018.2.8. 이전 연 27.9%, 이후 연 24.0%

「동법」 제8조 제2항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,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(간주이자)로 보는 것으로 규정** 하고 있음에도,

* 「P2P대출 가이드라인」('18.2.27.)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('19.2.19.)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

○ ㈜시소플랫폼대부 및 ㈜시소플랫폼(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)은 2017. 1. 5. ~ 2019. 9.30. 기간 중 ㈜◎◎◎◎ 등 18개 차주에게 52건의 대출(총 44억 21백만원)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 및 플랫폼이용수수료 징수 등을 통해 동 차주로부터 「동법」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28,378,738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

* 건당 초과비율 : 최소 0.02%p ~ 최대 48.41%p, 건당 초과금액 : 최소 4,110원 ~ 최대 4,010,950원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

<붙임 1>

# 관 계 법 규

## 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**제8조(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**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.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연체이자, 체당금(替當金)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. 다만,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2조(검사 등)** ⑦ 시·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**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)** ① 시·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,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

**제19조(벌칙)**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3.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

## □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[별표1]」

<별표1> **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**(동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 관련)

12.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

## 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5조(이자율의 제한)**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"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.

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.

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

1. 담보권 설정비용
2. 신용조회비용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**제7조의4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)**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
**□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2]」**

<별표2>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(제7조의4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~ 나. (생략)

다. 시·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.

2. 개별기준

| 위 반 행 위 | 해당 조문 | 행정처분기준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1회 | 2회 | 3회 |
| 더.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| 법 제13조 제1항제1호, 제2항제7호 | 영업 전부정지 6월 | 등록취소 | - |

**□ 「P2P대출 가이드라인('18.2.27. 시행)」**

2. 연계 금융회사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

② **(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)** 차입자의 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차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

2.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**(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금리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 포함)**

<붙임 2>

# 제재내용 공개안

## 1. 금융회사명 : ㈜시소플랫폼대부*

* 대표자 : 이정윤
등록번호 : 2018-금감원-1329(P2P연계대부업)
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-1, 1003호(여의도동, 대오빌딩)

## 2. 제재조치일 : 2021.1.13.

## 3. 제재조치내용

| 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 |
|---|---|
| 기 관 | 영업 전부정지 6월, 시정명령 |
| 임 원 | 문책 경고(1명) |

## 4. 제재대상사실

### 가.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

□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1항 및「동법 시행령」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*을 초과할 수 없고

* 2018.2.8. 이전 연 27.9%, 이후 연 24.0%

○ 「동법」제8조 제2항 및「동법 시행령」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,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(간주이자)로 보는 것으로 규정*하고 있음에도

* 「P2P대출 가이드라인」('18.2.27.)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('19.2.19.)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

○ ㈜시소플랫폼대부 및 ㈜시소플랫폼(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)은 2017. 1. 5. ~ 2019. 9.30. 기간 중 ㈜◎◎◎◎ 등 18개 차주에게 52건의 대출(총 44억 21백만원)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 및 플랫폼이용수수료 징수 등을 통해 동 차주로부터 「동법」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28,378,738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

* 건당 초과비율 : 최소 0.02%p ~ 최대 48.41%p, 건당 초과금액 : 최소 4,110원 ~ 최대 4,010,950원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금융위원회 | 금융감독원 |
|---|---|---|
| 소관부서 | 가계금융과 | 핀테크혁신실 |
| 연 락 처 | 02-2100-2513 | 02-3145-7142 |